

1. 지적유형(제목) : 보험모집 무자격자 등에 대한 모집위탁 및 수수료 지급

2. 제재대상사실

- OOO 보험대리점은 2005.4.1.~2007.7.31. 기간 중 모집에 종사할 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OOO 등 729명의 보험모집 무자격자에게 보험모집(7,252건, 보험료 32억 50백만원)을 위탁하고 모집의 대가로 4억 9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

3. 제제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신계약 모집업무 정지(180일), 과태료(500만원)
임 원	문책경고
직 원	

<관련법규>

1. 「보험업법」 제86조(등록의 취소 등)
2. 「보험업법」 제88조(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)
3. 「보험업법」 제99조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)
4. 「보험업법」 제209조(과태료)

※ <붙임> 과태료 산출내역 참조

<붙임 1>

## 과태료 부과금액 산출 내역

### 1. 부과근거

- 「보험업법」 제209조 (과태료) 제3항 제8호
  - 「보험업법」 제99조(수수료지급 등의 금지)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이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2. 부과기준

-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함

위반결과 \ 동기	고의	과실
중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75%
보통	법정최고금액의 75%	법정최고금액의 50%
경미	법정최고금액의 50%	법정최고금액의 25%

- 중대 :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, 금융기관 손실초래, 건전 금융질서 저해
- 보통 : 중대,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경미 : 단순법규 위반 등

### 3. 부과금액 결정

- 000 보험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산정액은 5백만원

부과대상	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	부과금액
보험대리점	- 보험모집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위탁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소속이 다른 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문란케 하고 보험 산업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의·중대를 적용하여 법정최고금액의 100%로 결정	5백만원